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0.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9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3. 10.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관재)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금까지 당직수당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차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지침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당직수당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 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하되,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2조)
- 2) 당직수당은 일·숙직 당직자별로 당직시마다 35,000원씩 지급 하도록 규정함.(안제3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당직(일·숙직)수당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당직수당 기준경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1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는 6급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식대(5,000원)와 목욕비(5,000원)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35,000원을 당직시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당직비 산출액은 1억395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2,382만원보다는 8,013만원의 당직비가 증액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정형기 위원) : 동사무소는 당직근무도 없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소요경비가 1억원이 넘는 이유와 동사무소를 당직근무와 무인경비로 운영하는 것 중 어느쪽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구 조례로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가?

○ 답변요지 (이관재 총무과장) : 구청은 매일 일·숙직을 하는데 근무인원은 6급포함 6명, 동사무소는 당직 보강시에 한해 당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이며, 동사무소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수당규정이 있으므로 구 조례로 인상하기는 곤란함.

○ 질의요지 (신봉현 위원장) : 당직수당 결정시 직장협의회와 사전 협의사항인가?

○ 답변요지 (이관재 총무과장) :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직장협의회에서는 당초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구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선을 5만원 정도로 고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3만5천원을 권고하고 있어 3만5천원으로 결정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10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금까지 당직수당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차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지침에서 규정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당직수당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하되,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당직수당은 일·숙직 당직자별로 당직시 마다 35,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 제46조 제1항

4. 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생략함.(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1 ~~호~~)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당직수당은 일·숙직 당직근무자 별로 당직시마다 35,000원씩 지급한다.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행규칙) 기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